

1. 제안이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의무복무에 대한 세부사항,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또는 불산입 기준 규정(안 제3조)
- 나.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안 제4조)
- 다. 의무복무 기관의 종류, 지정 및 변경 방법(안 제5조)
- 라. 의무복무의사 배치 시기 및 기준, 변경 주기(안 제6조)
- 마. 의무복무의사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지급주체(안 제7조)
- 바.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변경시 절차 및 기준(안 제8조)
- 사.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기한 및 주기(안 제9조)
- 아. 시정명령 이행기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등(안 제11조, 안 제 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1항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
2. 보건의료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3. 보건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4. 교육·연구 성과의 활용
5. 기술의 이전·사업화 및 창업 지원
6. 시설·장비의 공동 이용 및 제공
7. 출판 및 콘텐츠 개발
8.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
9.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10. 학생, 임원 및 교직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제9호 및 제10호의 수익사업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입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2.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 국내외 연구·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의무복무의사가 출산한 경우에는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국가 및 지역의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제5조(의무복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2.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무복무기관이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3.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의무복무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그 수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기관이 의무복무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기관의 지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무복무의사의 배치 시기 및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 기준을 매년 3월 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해당 의무복무의사
2. 해당 의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3. 해당 의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
4.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무복무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보에 기재된 날부터 배치된 의무복무기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의사별로 근무할 의무복무기관을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 지정 현황
2. 의무복무지역별 또는 의무복무기관별 의무복무의사 배치의 시급성
3. 의무복무의사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의무복무의사의 전문과목
 - 나. 전공의 수련 등 의무복무의사의 경력에 관한 사항
 - 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성적표에 표시된 전체 최종성적
 - 라. 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를 희망하는 지역 또는 기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의사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의사별로 근무할 의무복무기관을 정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에 일정 기간 단위로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 배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무복무의사의 보수 및 수당 등) ① 법 제37조제3항단서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의 장이 배치된 의무복무의사에게 추가하여 지급

할 수 있는 수당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취약지 근무 수당
 2. 특수과목 및 특수업무 수당
 3. 연구수당
 4. 교육수당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 ② 제1항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무복무기관의 변경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의무복무의사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치료 또는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의무복무의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무복무기관 및 의무복무지역 변경신청서 및 제1항에 따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접수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사는 지체 없이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등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등 및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2. 현재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지역 등의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3.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복무지역 등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 및 추가 인력 배치의 필요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신청인의 현재 의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2. 신청인이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의무복무의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이나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의무복무기관에서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기관 및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의무복무의사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신의 복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 상황

보고서로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의무복무기관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날

나. 제8조제8항에 따라 변경된 의무복무기관에서 복무를 시작한 날

2. 정기 보고 : 매 분기 말일

3. 수시 보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거나 없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
료 후 1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무 상황 보고서

2. 그 밖에 의무복무의사의 복무실적에 관한 사항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최종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 기준 결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별 의무복무기관의 결정·통보에 관한 업무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 또는 의무 복무지역의 변경 승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의 겸직 승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되는 의무복무 실태 보고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위탁 업무 운영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위탁 업무의 수행실적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 업무의 범위, 방법, 절차,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시정명령)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의무복무의사가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②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령 위반 사항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면허 자격정지 및 취소의 기준(제1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한다.
-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정지와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나. 행정처분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 1)·2)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감경대상	감경기준	
	면허취소	면허정지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3) 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수여일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
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나)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그중 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바. 면허정지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가.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	
1)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2)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3)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면허정지 1개월
4)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정지 15일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	면허취소
다.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	1차위반: 시정명령 2차위반: 면허정지 3개월 3차위반: 면허취소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무복무기관 및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면허번호		근무 지역	
근무기관		근무 기간	
희망 근무기관 및 근무지역			
변경 사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조제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무복무기관 및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무복무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면허 번호				
복무 상황				
기간		근무지역 및 기관	근무 상황	비고
부터	까지			
(보고사항)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0조제0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의무복무를 시작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0조제0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의무복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그 밖의 특기사항)				